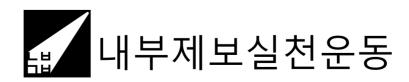
내부제보실천운동 2020년 제4회 정기총회 (서면총회)

■ 일시 : 2020년 4월 4일~7일

■ 장소 : 서면총회



차 례

의장인사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상임대표 인사	
전차 회의록 승인	5
상정의안	17
제1호 의안 : 2019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19
제2호 의안 :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21
제3호 의안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31
제4호 의안 : 상임대표 선출의 건	36
제5호 의안 : 기타 안건	38
부록	40
정관	42
회원명단	51

전차 회의록 승인



2019년 제3회 총회 회의록

일시 : 2019년 2월 27일(수) 오후 7시

장소 : 문화살롱 기룬(우리함께빌딩 2층)

내부제보실천운동

2019년도 제3회 내부제보실천운동 총회 회의록

1. 일시 : 2019년 2월 27일(수) 오후 7시

2. 장소 : 서울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문화살롱 기륜

3. 출석회원 : 42명 (참석 11명, 위임 31명, 불참 24명)

4. 상임공동대표 인사 : 김주언 상임대표가 인사 말씀하고 총회의장으로 박헌영 대표를 지명하다.

5. 의장 인사 : 박헌영 상임대표가 인사 말씀을 하고 회의를 시작하다.

6. 성원확인 및 회원점명 : 배병태 운영위원이 참석회원을 점명하니 정회원 66명 중 42명 참석 11명, 위임 31명, 24명 불참으로 보고하다.

7. 개회선언 : 의장이 정관 제14조 1항, 3항에 따라 정회원 66명 중 42명의 회원이 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개회 정족수가 되므로 내부제보실천운동 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 8. 서기지정 : 의장 박헌영이 배병태 운영위원을 본 회의 서기로 추천하고, 모두가 동의하여 배병태 운영위원이 서기 및 서명날인 인을 선임하다.
- 9.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에 대하여 의장이 참석 회원에게 의견을 묻고,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전차회의록을 승인하다.

10. 의안 보고 및 채택

의장이 의안을 상정하고 참석회원 전원의 동의로 의안 상정을 승인하다.

제1호의안: 2018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제2호의안: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제3호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의안: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기타안건

- 11. 부의안건 심의
- 가. 2018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의장의 요청으로 박광서 감사가 자료를 참조하여 감사보고를 한 후, 참석 회원에게 의견을 묻고,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2018년도 활동과 업적을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총평:

- (1) 2018년도 지출은 활동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도 정확 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2) 창립 첫해인 2017년보다 활성화가 미진한 듯하고, 특히 상임대표단의 교체 등 으로 인한 조 직의 불안정성 개선이 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2. 조직·재정

- (1)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의 수가 2017년도 68명에서 2018년도에는 80명으로 소폭 늘기는 했으 나, 2019년 중 회원 및 회비수입이 2018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도록 조직 활성화를 위한 임원 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 (2) 사회의 관심과 함께 일반회원의 참여를 유도할 만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회원과 재원의 확보 노력이 요청됩니다.

2019년 2월 27일

내부제보실천운동 감사 박광서



나.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배병태 운영위원이 201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을 보고한 후, 의장은 참석회원에게 의견을 묻고,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 한 후, 참석 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내부제보실천운동 2018년도 사업연혁

2018년 1월 16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2018년 1월 31일, 제2회 정기총회

2018년 3월 5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2018년 3월 13일, MB정권 금융계 비선실세 김승유 구속수사촉구 기자회견

2018년 3월 14일 내부제보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를 위한 사무총장 면담요청 공문 발송

2018년 4월 3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2018년 4월 13일 교육부 교원소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재임용 이행 촉구 공문 발송

2018년 4월 14일 회원 체육대회

2018년 5월 2일, 교육부 적폐관료 청산 촉구 기자회견

2018년 5월 9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경희대 시민교육 프로그램 내부제보자 인터뷰(안종훈 운영위원)

2018년 5월 18일, 상담센터 설립 준비 1차 회의

2018년 6월 4일 집행위 운영위 연석회의

2018년 6월 27일 임시운영위원회

2018년 7월 21일 비상대책위

2018년 8월 25일 운영위원회

2018년 9월 29일 운영위원회

2018년 10월 1일 청렴사회 민관실무회의 참석(배병태 운영위원 전경원 위원 대참)

2018년 10월 5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석(이지문 상임고문)

2018년 10월 30일 청렴사회 민관실무회의 참석(전경원 위원)

2018년 11월 2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참석(이지문 상임고문)

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8일 상명대 건 공정 판결 촉구 결의대회 참석(이영이 운영위원 외)

2018년 11월 16일 운영위원회

2018년 12월 8일, 2018 이문옥밝은사회상,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2018년 사업보고

□ 총평

-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준엄한 국민들의 촛불 심판이라는 역사적 분위기가 각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고발자의 확산과 사회적 문제의 전면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그러나, 내부고발이 사회적 유익을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자 제도로서 공감하고 있지만,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범위에서 머물러 있고, 정작 자기 조직의 문제로 다가오면 내부고 발자를 배신자나 문제있는 자로 낙인찍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의 목표를 가진 내부제보실천운동이 발족 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내부고발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한 바 있으나, 재정적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 변화 등에 따라 확장성을 담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한편 신임 상임공동대표단을 구성하여 2019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조직의 상근활동가 체계를 지속하지 못한 점은 조속히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주요 사업 성과

- 전 하나은행장 김승유 구속 촉구 기자회견
- 교육부 적폐 관료 청산 촉구 기자회견
- 상명대 건 공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 2018 이문옥 밝은사회상, 임시총회 및 송년의 밤

□ 한계

- 내부고발자에 대한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이 시급함.
- 내부고발의 이슈가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조직이나 사회가 내부고발에 의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 내부고발자를 위한 물리적, 심리적 안정 공간(Safety Zone)의 마련 필요.

2018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결산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이월금	11,647,279			일반	임대료	650,000		
				경	관리비	통신/발송/소모품비	2,118,039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11,995,030		상	행사비	송년의 밤	1,223,120		
후원수입	후원금	3,480,000			비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61,600	
사업수입	행사수입	770,000				소계	4,052,759		
NUTU	ӧᠰҭᆸ	770,000			입법지원	입법활동비	218,100		
기타수입	결산이자 등	861,072				내부제보지 원	이문옥밝은사회상	1,000,000	
				사 업	조직활동	회의비	1,312,800		
				비	고 ^기 글 8	워크샵	412,520		
					홍보비	홍보기획비	182,800		
						소계	3,126,220		
				인	직원급여	직원급여	16,380,322		
				건	퇴직급여	퇴직급여	2,340,653		

Γ								1
				비	4대보험	4대보험	1,658,923	
			-1	후생기타	후생기타	750,000		
						소계	21,129,898	
						예		경조비
			비	예비비	세금 및 수수료	287,270		
				비		소계	336,270	
	수입	28,753,381				지출	28,645,147	
				2018년 잔액 (수입-지출)			108,234	

다.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의장은 단체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구 개편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회원에게 의견을 묻고,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일부 개정의 안

1. 개정 사유

▷ 의사결정단계를 간소화하여 단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집행위원회 기구를 폐지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정관 제15조 7항정관 제2절정관 제21조

3. 정관 개정(안)

구조문	신조문	비고
제15조 7항 집행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15조 7항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제2절 운영위원회	
제21조 [집행위원회]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본 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집행하고 각 기구간의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 21조 삭제	

- ② 매달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의장은 상임 대표 중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고, 상임대 표가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대표들 중에서 상임대표가 지정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집행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대표, 각 위원회
- 의 장과 사무처 책임자로 한다.

4. 참고사항

▷ 이상의 내용은 2019년 2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심의, 결정한 사항임.

라.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은 201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회원에게 의견을 묻고,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다.

2019 내부제보 사업계획(안)

- □ 사업목표
 - 내부고발자 권익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
 - 내부고발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 역점사업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제보자 상담지원
- □ 기타사업
 - 조직사업 : 회원 워크샵 ○ 홍보사업 : 팟캐스트 방송

 - 연구학술사업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내부고발자 권익 침해 사례조사 및 대응
- □ 기대효과
 -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식 개선
 - 내부고발의 권익 증진
 - 내부고발 활성화를 통한 공익 증진
- □ 사업예산 총액 : 총액 43,108 천원

□ 세부사업계획

- 1) 회 의
 - -. 총회개최
 - -. 운영위원회(연 2회)
- 2) 입법활동 및 기구 설립 추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 3) 제보자 지원활동
 - -. 내부제보자 상담지원
- 4) 조직활동
 - -. 청렴활동가(청렴강사) 육성
 - -. 회원확대
 - -. 회원 워크샵
 - -. 임원 워크샵
- 5) 홍보활동
 - -. 뉴스레터 발행
 - -. 캠페인 진행 : 공익제보 절차에 관한 홍보
 - : 청렴교육강화 (교과서 집필기준 내 포함)
- 6) 공모사업
 - -. 내부제보자의 심리적 위기 극복과 연대감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
- 7) 재정사업
 - -. 후원의 밤

2019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예산(안)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1111 + 01	T.				입법활동	토론회	1,500,000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20,000,000		사	HH <u>=0</u>	입법활동비	1,000,000	
				업	내부제보	제보자지원	3,000,000	
후원수입	후원금	8,000,000		비	지원	상담지원	2,000,000	
					시원	교육활동	350,000	

						이문옥밝은사회상	2,000,000			
사업수입	행사수입	5,000,000					3,000,000			
					회의비	총회	500,000			
기타수입	공모사업	10,000,000				운영위원회	500,000			
기단구합	으포시합	10,000,000			워크샵	임원워크샵	500,000			
TU-1						전체워크샵	1,000,000			
전년도		108,234			홍보비	홍보기획비	500,000			
이월					81	뉴스레터	300,000			
						공모사업비	10,000,000			
						소계	24,150,000			
						관리비	600,000			
					일반	통신/발송비	1,200,000	우편 등		
					관리비	소모품비	600,000			
				경 상 '''		상		교통비	300,000	
								±0.11.1	송년회	1,400,000
				-1	행사비	후원의밤	1,500,000			
					기타	업무추진비	200,000			
						소계	5,800,000			
						활동기급여	8,400,000	70만×12		
				인		용역급여	3,600,000	30만×12		
				건		퇴직급여	-			
				비		4대보험	-			
						후생기타	-			
						소계	12,000,000			
				예	경조비		200,000			
				비	기타		958,234			
				비		소계	1,158,234			
	 수입	43,108,234				지출	43,108,234			

마. 기타 안건 : 의장이 기타 안건이 있는지 묻다.

1) 김형남 운영위원이 감사선출안을 상정하길 요청하다.

이에 의장이 참석회원에게 의견을 묻고,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감사 선출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다.

김형남 운영위원이 안성재 노무사의 재선출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를 신임감사 후보로 추천한 후, 의장이 참석회원에게 의견을 묻고, 특별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안성재 노무사와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를 감사로 선출하다.

12. 폐회선언 : 의장이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묻고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8시 00분에 총회를 마치다.

총희의 의사 진행의 경과와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 날인하다.

2019년 2월 27일

내부제보실천운동

의장 : 박헌영

서기 : 배병태(일)

상정의안



_	18	_
	10	

제 1호 의안 2019년 종합감사 보고 및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19년 종합 감사 보고서를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8항

감사보고서

내부제보실천운동의 2019년도 활동과 업적을 점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총평:

- (1) 2019년도 지출은 계획된 사업 활동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서가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매 월말마다 정확하게 게시되어 보고가 잘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2) 전체적인 수입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형편에 맞게 적절한 지출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 회원 및 회비 증대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 (3) 상임대표단 교체 이후, 조직적인 안정화가 일정부분 이뤄졌으나 단체 사업의 활성화와 조직적 확대 및 재원 마련 등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2. 조직·재정

- (1) 2019년 초반 임원교체 등의 혼란기에 회원 수가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후 상담을 통한 회원 증대를 통해 2018년도 수준의 회원 및 회비 수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원금 조직과 기타수입이 급격하게 감소된 바, 전체적인 재정은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회원 및 회비수입 증가를 위한 임원진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 (2) 전년에 비해 상담 이후 자발적으로 가입한 회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적 결속력과 회원 간 유대감 형성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 (3) 단체 결성 4년차를 맞이하여, 단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공익제보자 상담 지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일반회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회원과 재원의 확보 노력이 요청됩니다.

2020년 2월 29일

내부제보실천운동 감사 이석만

제 2호 의안 2019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19년 사업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 정관 제 15조 3항

내부제보실천운동 2019년도 사업연혁

[운영위]1월 5일 1차 운영위원회 [운영위]2월 20일 2차 운영위원회 [정기총회]2월 27일 3차 정기총회

[상담]3월 6일 심리상담사,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건설현장 노동자 관련 상담 3건 접수(배 현봉 회원)

[상담]3월 12일 영농조합 관광선박 내부제보

[입장서]4월 2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에 대한 입장 발표

[입장서]4월 3일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 공익신고에 대한 입장 수정 발표

[상담]4월 중 장자연 관련 제보, 기아자동차 영업소 부당판매 내부제보, 양재R&CD혁신허부 내부고발 3건 접수

[상견례]4월 16일 국민권익위원회 상견례

[운영위]4월 26일 3차 운영위원회

[입장서]5월 3일 유선주 국장 보호조치 요청 권익위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회원가입]5월 중 이탁연(양재혁신허브 내부고발자), 진웅용(용화여고 교수) [연대]5월 30일 동구학원 정상화 결의대회

[상담]6월 중 대구대 교수 부당처분에 대한 건, 정부기관(연구소) 직장 내 갑질 및 부당노 동행위에 대한 건

[상담]6월 10일 기아자동차 영업소 부당판매 내부제보자 면담

[인터뷰]6월 21일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 인터뷰(박헌영, 김주언, 안종훈 참석)

[기타]7월 1일 기부금품 모집 등록 완료 및 시행

[입장서]7월 8일 양재혁신허브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규탄 입장 발표

[공문]7월 10일 양재혁신허브에 대한 서울시 감사결과 관련 입장 공문발송(서울시, 카이스트, 감사실)

[상담]7월 중 육주학원 해직교사 서울시교육청 상대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건,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내부제보에 따른 보복 건, 밸류인베스트코리아투자사기 사건 피해자 대책위 지원요청 건

[회원가입]7월 중 김도리(육주학원 해직교사)

[운영위]7월 12일 4차 운영위원회

[연대]7월 19일 유선주 국장 징계위 관련 피켓팅

[회원의 날]7월 22일 2019년 회원의 날 하계 야유회

[회원가입]7월 중 유혜림(문화예술계 활동가), 김미덕

[회원가입]8월 중 이종인

[상담]9월 중 평택대 교수&직원회 대표 양단희 교수 부당 해임 건, 차성복 소령 공익제보 건, 목포 삼학도 석탄부두 공익제보 건

[상담]10월 중 순창요양병원 공익제보 건

[친목]10월 7일 친목 모임 진행

[공문]10월 28일 순창요양병원 공익제보 관련 조사기관 의견서 발송

[운영위]11월 8일 5차 운영위원회

[공문]11월 21일 차성복 소령 탄워서 발송

[외부]11월 21일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참여

[공문]12월 6일 순창요양병원 공익제보 관련 수사기관 내용증명 발송

[이문옥 밝은사회상]12월 10일 심사위원회 진행

[회원가입]12월 11일 전영숙 부부(로타리 클럽 공익제보자)

[**운영위**]12월 14일 5차 운영위원회

[연말행사]12월 21일 2019 이문옥 밝은사회상 및 송년의 밤

[상담]12월 중 포천 가산파출소 소장 비위 및 갑질제보, 공동주택 도,시보조금 지원 사업 악용 사례 공익제보,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공익제보 이후, 부당해고 사례,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후원강요 내부제보

[공문]12월 중 순창요양병원 공익제보 건 관련 의견서

[공문]12월 24일 포천 가산파출소 공익제보자 징계 관련 의견서

1 2019년 사업보고

□ 총평

- 내부제보실천운동 2기가 출범하면서 단체의 조직적 안정과 새로운 사업 구상 등이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음. 적절한 정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의사결정단계를 간소화하였고, 이는 단체 운영의 효율성 증대로 이어졌음.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내부고발자들의 확산과 사회적 문제는 지속 되었으나, 단체의 조직적 개편과정 속에서 단체가 확장된 사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음.
- 단체와 관계를 지속해온 내부고발자 외에도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단체와 함께 하였고, 국민권익 위의 한계, 제보 이후의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 등으로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위축되고 고초를 겪 는 상황은 반복되어 왔음.
-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발족 이후 지금까지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사회·경제적 지원, 심리적 안정 지원 등을 위해 활동하였음. 그 결과 적절한 시기마다 내부고발의 이슈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고, 다양한 층위의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장되었음.
- 그러나 목표로 하였던 입법활동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은 실제 사업화 되지 못하였으며, 조직적 안정이 우선과제로 부상한 상태에서 재정적 문제와 여러 환경적 변화 등의 요인에 의해 상담지원 외 사업에 대한 확장성은 부족했음.
- 한편 추가적인 공동대표 선출은 2020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의 새로운 힘이 될 것으로 보임. 특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타 공익제보자 지원 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장된 사업을 기획하고, 그 성과가 단체로 환류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그러나 현재 반복되는 재정적 어려움과 조직적 확장이 부족 등은 향후 주요 과제로 여겨지며, 운영위의 체계를 강화하여, 내부고발자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함.

□ 주요 사업 성과

-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공익신고 지원
- 동구학원 정상화 결의대회 연대
-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 인터뷰
- 회원 워크샵, 친목모임 진행

-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참여(IACC 워크숍 준비)
- 2019 이문옥 밝은사회상, 및 송년의 밤

□ 하계

- 법, 제도적 개선이 전무한 상황에서 내부고발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이 필요함.
- 단체 차원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의 전문성과 전문적 네트워크 마련이 필요함.
- 조직 확장과 재정마련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마련이 필요함.

내부제보실천운동 2019 활동보고

활동	당내용	내부제보실천운동 제 3회 정기총회					
일시	02.27	장소	문화살롱 기룬	참여인원	약11명		

정관 제 1절 13조에 의거 내부제보 제 3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다. 참석인원 : 42명 (참석 11명, 위임 31명, 불참 24명) 의장 : 박헌영



활동	통내용	동구학원 정상화 결의대회 연대					
일시	05.30	장소	동구마켓팅고 앞 앞	참여인원	약 7명		

동구학원 정상화 결의대회에 연대하다.

박헌영 상임대표가 연대발언하다.



활동내	용	교육희망 인터뷰					
일시	06.21	장소	사무처 사무실	참여인원	약 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관지 교육희망 인터뷰 진행

"잘 키운 내부고발 하나, 열 순실 안 부럽다"

탐방 / 공익제보로 세상 바꾸는 '내부제보실천문동'

김상정기자 기사입력 2019/07/08 [14:09]

2015년 '하나고 입학 및 학사비리'를 세살에 알린 전경원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 등을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7년 서울미술고의 회계 비리 등을 신고한 절미현 교사,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사립학교내 부 비리를 고발한 이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내부제보신원론동'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3호선 동대입구역 인근에 있는 이 단체 사무실을 찾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K스포츠 재 단 내부 비리를 고발한 박현업 씨, 1986년도 전두한 집권 당시 접부에서 언론사에 하당된 '보도지침'을 폭로한 김주언 기자, 공국대 집성화를 위해 용장 작선체 도입을 요구하며 싸웠던 안드레 씨, 그리고 안증훈 교사가 기다 리고 있었다. 이 단체 구호 '잘 키운 내부고발 하나, 열 순실 안 부럽다'에 딱 맞게 그아말로 내부고발을 통해 대 한민국의 역사를 바꿔 온 이들이다.



활동내용		공정위 유선주 국장 징계위 관련 피켓팅					
일시	07.19	장소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참여인원	약3명		

공정위 유선주 국장 부장 징계 관련 피켓팅을 진행하다.



활동	등내용		2019년 회원의 날 하	계 야유회	
일시	07.22	장소	중랑구 캠핑장	참여인원	약10명

2019년 회원의 날을 맞이하여 하계 야유회를 진행하다.



활동내용		친목모임 진행					
일시	10.07	장소	장충동	참여인원	약20명		

친목모임을 진행하다.



활동	등내용	2019 이문옥 밝은사회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일시	12.21	장소	문화살롱 기룬	참여인원	약 50명		

- 제 3회 이문옥 밝은 사회상

수상자 : 심석희 선수, 허00 울주공단 공익제보자, 조00 요양병원 공익제보자

- 송년의 밤 진행



2019년도 결산서

○ 결산(2019.1.1. ~ 12.31.)

	수 입					지 출	•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이월금	이월금	198,917				임대료	600,000	
Med	Med	190,917			일반	CMS 사용료	660,000	
					관리비	통신/발송	634,304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11,094,310		경상	경 상	소모품비/교통비	575,259	
후원수입	ㅎ이그	1 500 000		비	행사비	송년의 밤	1,831,660	
주전구입	후원금 	1,500,000			기타	업무추진비	178,500	
사업수입	행사수입	810,000				소계	4,479,723	
					내부제보	상담센터	17,800	
기타수입	결산이자 등	230,240			지원	이문옥밝은사회상	1,000,000	
					*101HI	총회	203,380	
					업 회의비 비	운영위	229,300	
				워크샵	회원워크샵	397,110		
						소계	1,847,590	
				인 건	급여	활동가급여	6,416,020	
				비		소계	6,416,020	
				예	예비비	경조비	483,500	
				비비		기타(세금,수수료 등)	56,400	
						소계	539,900	
총	수입	13,833,	467		총 지출		13,283,233	
				2	.019년 잔	액 (수입-지출)	550,23	4

제 3호 의안 2020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의결 주문 : 2020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을 승인하다

제의 관계 조항: 정관 제 15조 3항, 제 15조 5항



2020년 내부제보 사업계획(안)

□ 정세 및 과제

- 사회 전반에서 내부제보가 확장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할 제도적, 실질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 조국사태 이후 진영논리가 강고해졌고, 내부제보에 대한 사회적 이슈의 파급력이 부족 함.
- 총선 시기와 맞물려 공익제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필요.
- 단체의 내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을 비롯한 공익제보자 지원에 대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제보자 상담에 대한 질적 역량 확충이 필요.
- 단체 결성 4년 차를 맞이하여, 조직의 질적,양적 확장이 필요. 신규 회원을 비롯하여 회원 간 유대감과 연대관계 구축이 필요.

□ 사업목표

- 총선 시기 집중사업 : 내부고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발표 및 제안 및 총선 이후 입 법 활동으로 확장.
- 내부고발자 지원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친목 및 연대 사업 확장을 통해 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
-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2020년 IACC 워크숍(국제반부패회의)을 공동기획 하고, 이를 통해 단체 홍보.

□ 역점사업

- 총선 사업 :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후보자 공약제안, 각정당 정책제안, 협약식 등을 진행, 이후 입법활동을 위한 네트워크를 마련. 일련의 과정에서 단체 및 공익제보자들의 사안을 사회적 이슈로 부상.
- 제보자 상담지원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을 형성하고, 상담 및 지원에 대한 체계 마련.

-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 2020년 IACC 워크숍(국제반부패회의) 공동기획을 통해서 타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단체를 적극 홍보.
- 모금 사업 : 단체 재정마련 및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모금 사업 진행.(온/오프라인)

□ 기타사업

- 조직사업 : 1년에 최소 1회의 회원 워크샵 진행.
- 홍보사업 : 다각적인 SNS활용을 통해 단체 및 단체활동 홍보
- 캠페인 사업 : 내부고발자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 연대 사업 : 공익제보 이후, 투쟁 중인 사업장과 연대관계 구축
- 내부고발자 권익 침해 사례조사 및 대응

□ 기대효과

- 내부고발자 권익 증진과 사회적 인식 개선
- 단체의 내부적 조직 강화를 통해, 공익제보 활동의 구심점 마련
-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제보활동 촉진
- □ 사업예산 총액 : 총액 31,550 천원

□ 세부사업계획

- 1) 회 의
- -. 총회개최(연 1회)
- -. 운영위원회(분기별 1~2회)
- 2) 총선 대응 정책마련 및 입법활동 추진

-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비롯한 총선시기에 맞춰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 제안 및 협약식 진행.
 - -. 총선 이후, 타 단체들과 함께 입법활동 추진

3) 제보자 지원활동

-.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그룹 형성 및 네트워크 마련으로 제보자 지원활동의 전 문성과 체계성 강화

4) 조직활동

-. 회원 워크샵 : 정기적인 회원 워크샵 진행

5) 홍보활동

- -. SNS 활용 : 다각적인 SNS 활용
- -. 캠페인 진행 : 공익제보자 인식개선 및 신고절차 매뉴얼 등

6) 서울시 교육청 공익제보센터 민관협력네트워크

- -. 2020 IACC 워크숍(국제반부패회의)
- -.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공동사업 제안

7) 연대사업

-. 내부제보자 투쟁현장 상시연대 : 현재 진행 중인 투쟁현장을 확인하여, 적극적인 연대활동 전개

8) 재정사업

-. 기부금품 모집 사업

2

2020년도 내부제보실천운동 예산(안)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비고	관	항	목	금액	비고
±11	TI TI OI TI II				입법활동	토론회	500,000	
회비수입	정회원회비	13,000,000			H H E O	입법활동비	800,000	정책제안
후원수입	후원금	5,000,000			내부제보	제보자지원	1,000,000	연대사업 포함
		-,,			지원	상담지원	1,000,000	
사업수입	행사수입	3,000,000		사	업	이 문옥 밝은사회상	3,000,000	
		, ,				총회	500,000	
기타수입	기부금 모집	10,000,000		비	<u> </u>	운영위원회	500,000	
전년도					워크샵	회원워크샵	1,000,000	
이월		550,234			홍보비	홍보기획비	500,000	
.= ,			모금	기부금 모집	10,000,000			
						소계	18,800,000	
						임대료	600,000	
				경 상	일반 관리비	통신/발송비	800,000	우편 등
						소모품비	600,000	
						교통비	400,000	
				비	행사비	송년회	2,000,000	
					기타	업무추진비	200,000	
						소계	4,600,000	
					건 있건비	활동가급여	7,200,000	60만×12
				인		용역급여	-	
				건		퇴직급여	-	
				비		4대보험	-	
						후생기타	-	
						소계	7,200,000	
				예	경조비		500,000	
				비	기타		450,234	수수료 등
				비		소계	950,234	
	수입	31,550,234				지출	31,550,234	

제 4호 의안

상임대표 선출의 건

의결 주문 :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상임대표를 추가 선출하다

제의 관계 조항: 정관 제 15조 3항

추천근거 및 배경

1. 회의록

회의일시	2019년 11월 8일 (금) 19시 00분	회의명	운영위원회 회의	작성자	안드레
참석대상(11명)	권희청, 김민규, 김주언, 김형남, 박헌영, 배병태, 송병춘, 안종훈, 이영이, 장경선, 전경원				
참석자(5명)	김민규, 김형남, 박헌영, 배병태, 장경선				
불참자(6명)	권희청, 김민규, 김주언, 송병춘, 이영이, 전경	원			
참관(1명)	안드레(간사)				

	나. 내용	
	제 5호 안건 : 기타 안건	
가. 토의	- 박헌영 대표가 단체 대표 추가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김형남 변호사를 추천하다.	
내용	김형남 변호사를 제척하고, 운영위원 4인 중 4인 전원 찬성으로 본 안건을 의결하	
	다. 이후 2월 총회에 위 안건 상정을 결의하다.	
	- 사무총장 체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한다.	

추천 안

現 상임대표

김주언(85년 보도지침 폭로사건 언론공익제보자) 박헌영(국정농단 내부제보자) 송병춘(前 서울시 감사관)

추가 상임대표 선출(1인)

김형남(現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u>제5호 의안</u> 기타 안건

부 록

*정관 *회원명단



내부제보실천운동 정관

제 정: 2017년 3월 15일

1차개정 : 2018년 1월 31일

2차개정 : 2019년 2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모임은 '내부제보실천운동'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단체는 공익을 위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제보를 활성화하고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맑고 투명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구성]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한다.

제4조 [사업]

- ①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의 활동과 사업을 전개한다.
- 1. 내부제보의 상담, 안내와 지원 등을 통한 내부제보자 권익 보호 사업
- 2. 내부제보사건의 신고 및 조사 담당기관 및 수사기관의 공정한 처리 촉구
- 3. 공직기관, 기업체, 학교 대상 내부제보 활성화 교육 및 캠페인
- 4. 내부제보자 보호를 포함한 반부패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 사업
- 5.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공익재단의 설립 준비와 지원
- 6.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단체와 연대활동
- 7. 그 밖의 본 단체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 1. 본 단체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 2. 회원은 일반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3. 각 회원의 가입절차와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7조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1. 본 단체의 운영과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2. 본 단체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1. 본 단체의 정관 및 내규를 지킬 의무
- 2. 본 단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자격 상실]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본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11조[회원모임협의회]

- ① 본 단체 회원은 사무처와 협의하여 회원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 ② 회원모임의 활성화와 모임 상호간의 협력을 위하여 회원모임으로 구성된 회원모임협의회를 둘수 있다.
- ③ 회원모임협의회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둘 수 있고, 본 단체의 목적과 사업의 취지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④ 회원모임과 회원모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12조 [지위]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소집과 방식]

-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안에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 1/10이상 이나 감사의 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 ② 총회의 소집은 상임대표 전원의 명의로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총회의 의장은 상임대표 중 연장자가 맡으며, 상임대표 불출석시에는 공동대표 중 연장자가 맡는다.
- ④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인터넷을 이용한 총회에서의 토의, 의결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내규로 정한다.

제14조 [정족수]

- ① 총회의 정족수는 재적회원의 과반으로 한다.
- ②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총회의 구성원이 불출석할 경우, 출결 및 안건의 의결권을 출석 회원에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과 의결사항]

- ①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2. 공동대표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등에 관한 사항
-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6. 본 단체의 해산에 관한 사항
- 7. 운영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8. 감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9. 기타 본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② 총회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그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6조 [운영위원회의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때까지 본 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 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제1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과 위촉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 운영위원은 상임대표를 포함한 공동대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 책임자, 각 회원모임의 대표로 한다. 단, 회원모임의 대표에 대한 기준과 범위는 내규로 정한다.
- ③ 위촉직 운영위원은 법률지원단장, 상담센터 소장 등 본 단체에서의 역할을 감안하여 15명 내외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전원 명의로 소집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상임대표들간의 협의로 정하여 회의를 주관하다.

제18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소집하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감사 및 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구성원 재적 1/3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대표단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의결에 부의할 수 있다. 서면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추인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운영위원 1/3이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상임대표단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운영위원회의 권한]

① 운영위원회는 상임대표 및 각 위원회의 장, 법률지원단장의 선출과 상담센터 소장을 임면하고, 각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며, 각 회원모임에서 선출된 회원모임 대표 및 회원모임협의

- 회 대표를 인준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각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하며, 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이를 위해 사무처를 설치·운영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각 위원회와 각 부설기관의 활동을 지원한다.
- ④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 ⑤ 본 단체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임대표, 공동대표, 상임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 ⑥ 본 정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 단체의 운영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3절 공동대표, 상임대표, 고문, 자문위원, 감사 등

제22조 [공동대표 및 상임대표]

- ① 공동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대표는 10인 내외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를 통해 공동대표 중 3인 내외를 상임대표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상임대표는 본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처를 지휘 감독한다.

제23조 [고문 등]

- ① 운영위원회는 내부제보활동 및 사회투명성 발전에 공헌이 있는 자, 공동대표 등으로 활동한 전직임원 등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의 상임고문을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내부제보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상임대표는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법률지원단 등]

- ① 원활한 상담 및 법적 지원과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을 위해 전문가들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다.
- ② 법률지원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법률지원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상담 및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반조치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센터를 둘 수 있고, 상담센터 소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임면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

- ① 본 단체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둔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비위의 사실이 있거나, 감사 결과 긴급한 의결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절 위원회, 활동 기구, 사무처, 후원회

제26조 [위원회]

- ① 본 단체는 기획, 재정, 홍보, 조직, 대외협력 등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본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상임 위원회를 둘 수 있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해당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회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자 희망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대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 [활동기구]

- ① 본 단체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구 및 산하기관을 둘 수 있다.
- ② 각 활동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③ 각 활동기구는 본 단체의 목적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전체 사업취지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처]

- ①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총장은 본 단체의 실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업계획에 따른 사무와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사무에 관하여는 상임대표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며. 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 ④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무국장, 사무처장 등의 직책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이 궐위 시 사무국장, 사무처장의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사무국장과 사무처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사무처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9조 [후원회]

- ① 본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후원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상임대표가 위촉한다.

제5절 지역조직, 부설기관

제30조 [지역조직]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31조 [부설기관]

본 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32조 [회계 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과 결산]

- ① 사무총장은 다음 해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 ② 사무총장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 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제34조 [수입]

본 단체의 수입은 회원 회비, 후원금, 특별 모금,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장 정관개정

제35조 [정관 개정]

- ① 본 단체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다.
- ② 개정안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

제36조 [해산 사유]

본 단체는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 ① 설립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
- ② 설립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 ③ 기타 설립 취지에 따른 단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을 때

제37조 [해산 절차]

- ①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을 결정한다.
- ② 해산 결정과 함께 청산에 필요한 업무 처리를 위해 총회에서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8조 [잔여 재산의 귀속]

본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단체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7장 보 칙

제39조 [정당활동 등의 제한]

대표단, 사무총장, 각 위원회의 장이 공직에 취임할 경우 또는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사임하여 야 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본부의 주요 직책을 맡거나 상임 선거운동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의 권한이 정지되며 선거활동 종료 이후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

제40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명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당 월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수입내역과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 ③ 기부금은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제41조 [준용 규정]

- ①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 ②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정관은 2017년 1월 16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8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정관은 2019년 2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까지 단체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 및 창립총회의 의결, 준비위원회의 의결은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u>내부제보실천운동 회원명부</u>

고혜영	김주언	안종수	정미현
권승구	김 준	안종훈	정유진
권오영	김현진	안천식	정현경
권희청	김형남	양시경	조대희
김기홍	김희정	오현석	조성강
김나린	류수연	유인정	조승현
김도리	문성훈	유혜림	조재현
김동숙	박광서	이경애	진웅용
김명환	박오복	이도희	차성복
김미덕	박종린	이민경	최홍범
김미현	박헌영	이상훈	하윤옥
김민규	박현배	이석만	한경호
김상균	배병태	이영이	한만수
김서중	배현봉	이종인	허태곤
김성환	백수인	이종헌	형근희
김연숙	백찬홍	이지문	황규한
김영수	서진희	이지윤	황성연
김영숙	석지관	이탁연	황운주
김영인	송병춘	장경선	
김은영	신광식	전경원	
김이슬	신현철	전영숙	

